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34호 2026. 9. 28.(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102호)

공 고

○예천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예천군 고시 제2026-1247호)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고시 제2026-124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 허가
하 천 명	내성천(국가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수(건설교통과)
위 치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번지 일원
점용면적 (채취량)	10,000㎡(1,000㎥)
점용목적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사업개요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점용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2월 31일

예천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천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예천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안 제2조~제5조)

○ 지원대상 : 예천군 공무원(전출·퇴직자 포함),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 지원항목 :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등

○ 지급기준 : 심급별 1명당 1천만원 기준, 총 3천만원 한도 내

나. 지원신청 방법 및 신청 순서(안 제6조~제7조)

○ 소송비용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법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보험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우선 신청 후 본 지원을 신청하도록 규정

다. 지급결정 및 지원된 소송비용 반환 근거 규정(안 제7조~제8조)

○ 소송비용 지원 지급 결정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사건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sds456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 나.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청원경찰
 - 다. 가목에 따라 군에 재직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당사자가 되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 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등
 - 다.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비용

제4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사 결과 불기소 결정된 경우

2. 형사소송 결과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민·형사 절차에서 중대한 고의·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확정된 경우

제5조(지급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심급별료(형사 고소·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명당 1천만원,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예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4조의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인 선임 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의 반환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도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성명			
	연락처			
관련사건	관할기관			
	사건유형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개요		※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행정종합배상공제회		☐ 신청 (금액 :) ☐ 미신청		
지원요청액	총계	변호사 선임비용	그밖의 비용	
	원	원	원	
수령계좌		예금주 : , 계좌번호 :		

「예천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판결문 등(심급별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 2. 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명서류 사본 5. 변호사 자문서 등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고문변호사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문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계적인 법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촉 제한하도록 함.

나. 이해충돌행위 예방 근거 마련(안 제4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

다. 고문변호사 월 자문수당 금액 기준 완화(안 제8조)

- (당초) 월 20만원 → (변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sds456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수가 위촉하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외부기관 추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알리고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 수행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천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법무법인 △ △ ○ ○ ○)

귀하를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천군 고문변호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예천군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변호사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제7조 관련)

부서명	의뢰일	문 의 내 용	회신일	회 신 내 용	자 문 변호사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고문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예천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행 현황

년 월 일

동 의 자 : 변호사 (서명)

예천군수 귀하